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62호 2022. 9. 30(금)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22호 남원시 명예감찰관 운영규정 등 훈령 일괄폐지규정-----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916호 도로지정공고----- 3
- 남원시 공고 제2022-191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4
- 남원시 공고 제2022-1921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6
- 남원시 공고 제2022-1926호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16

예 규

- 남원시 예규 제33호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23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명예감찰관 운영규정 등 훈령 일괄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9월 30일

남원시 훈령 제 422 호

남원시 명예감찰관 운영규정 등 훈령 일괄폐지규정

제1조(「남원시 명예감찰관 운영 규정」의 폐지) 남원시 명예감찰관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남원시 회의 및 출장 통제에 관한 규정」의 폐지) 남원시 회의 및 출장 통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남원시 행정관리 통제 규정」의 폐지) 남원시 행정관리 통제 규정은 폐지한다.

제4조(「남원시 직장 예비군 무기·탄약고 설치 및 관리 규정」의 폐지) 남원시 직장 예비군 무기·탄약고 설치 및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남원시 공고 제 2022 - 1916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2-3 4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166-9(전)	장*원	2022-건축과- 건축신고-222	55	6.4	350	1225-2	350	장*원

남원시 공고 제2022-191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도통 택지2지구)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30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관계서류는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

나. 입안사유

- 1) 남원고속버스터미널은 1985년 최초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고, 2013년 도통택지 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로 편입, 기반시설로 결정 되었음
- 2) 인구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및 내부경영난에 따라 남원고속버스터미널 영업이 중단(2022. 4. 1.)
- 3)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인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지정된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 폐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상업용도를 부여,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건립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2. 공람 기간 : 신문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3. 공람 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제출서 양식)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도서 : “실음생략” (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1921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남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등을 조정하고, 인용조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심사수당 규정 (안 제12조제2항)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19조의2, 제40조제2항)
-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 변경 (안 제21조제4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산정기준 변경 (안 제35조제5항)

3. 입법예고기간 : 2022. 09. 26. ~ 2022. 10. 17.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582), 팩스(063-620-6719),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등을 조정하고, 인용조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심사수당 규정 (안 제12조제2항)
- 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19조의2, 제40조제2항)
- 다.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 변경 (안 제21조제4항)
- 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산정기준 변경 (안 제35조제5항)
 - (현행)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 (개정안)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26. ~ 2022. 10. 17. (21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수당 및 여비)”를“(수당 및 여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단서 중 “영 별표1제21호”를 “영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 제21호”로, “창고시설”을 “창고 등 부대시설”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를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을 “낮은”으로, “0.5배”를 “0.8배”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를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은 경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수당 및 여비) (생략)</p> <p><신설></p> <p>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창고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50퍼센트를 적용하고, 파이프구조로 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25퍼센트를 적용한다.</p> <p>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p>	<p>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 영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 제21호-----</p> <p>창고 등 부대시설-----</p> <p>-----.</p> <p>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u>건축사법</u>」에 따른 건축사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p>	<p>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 ----- ----- ----- ----- ----- ----- ---</p>
<p>⑤ (생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 ② 삭 제 ③ (생략) ④ (생략)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u>높은 건축물</u> 각 부분의 <u>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u></p>	<p>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낮은 --- -----</p>

현 행	개 정 안
<p>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p>	<p>----- ----- ----- 0.8배 -----.</p>
<p>⑥ (생략) 제40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③·④ (생략)</p>	<p>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 ----- -----. ③·④ (현행과 같음)</p>

남원시 공고 제2022-1926호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 축산업 육성은 「축산업」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어야 하나, 축사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축산업」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축사폐업지원금 비용 추계시, 예산상 집행하기 어려운 경비임.

2. 주요내용

-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4호 <삭제>

3. 입법예고기간 : 2022. 09. 28. ~ 2022. 10. 18.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축산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425),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축산과(063-620-6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9.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축 산 과 장

1. 개정이유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부합하지 않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업 경쟁력 지원 내용 중, ‘축산 폐업 지원’ 관련 조항 삭제
(안 제6조제14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 ~ 9.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기타사항

- 전라북도 자치법규 검토 결과: ‘기타 문제점 있음’ 으로 통보.

추후 개정 시 검토를 권고(2022.7.1.)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경쟁력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13. (생 략)</p> <p>14. <u>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축사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u></p> <p>15. (생 략)</p>	<p>제6조(경쟁력 지원) -----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5. (현행과 같음)</p>

붙임

관련 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 유지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3. “교통지도·단속원”(이하“단속원”)이란 시장의 명을 받아 남원시청교통과(교통지도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의견진술”이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자가 과태료를 부과·징수 결정하기 전까지 진술한 불가피한 사유 등의 의견을 말한다.
5. “이의신청”이란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처분에 불복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기한 신청을 말한다.
6. “CCTV”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고정식 및 이동식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7. “화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차량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및 과태료 등 부과·징수·감면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불법 주·정차 법규 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CCTV로 촬영된 영상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불법 주·정차 단속

제4조(단속 원칙) ① 불법 주정차 단속(이하 “단속”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단속 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같은 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한다.

제6조(단속시간) ①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고정식 무인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9:00~19:00까지 한다. 교통안전 및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보호구역은 등교 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8시부터 단속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식 시간에 해당하는 11:30~14:00까지는 단속을 미룬다. 다만 교통 흐름에 방해되거나 긴급사항 필요가 있을 때는 단속을 할 수 있다.

④ 주민신고제(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시간: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8:00~20:00 적용)

2. 단속 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나. 도로모퉁이 5m 이내

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라.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마.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3. 접수요건

가. 사진 촬영 다음 날(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나.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2회 촬영한 사진(추가 사진 참조 가능)

다. 사진 상 주차 위반 사실(위반구역 및 차량번호판)의 명확한 표시

제7조(단속 완화·유예)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장 주변의 단속 완화·유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는 단속이 가능하다.

1. 단속 시간: 행사 시작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2. 단속 조건: 교통 안내 요원을 배치한 후 질서 유지 활동을 할 때

제8조(주차 위반 조치) ① 남원시 소속 공무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인력으로 단속(수기 단속)시 ‘과태료 부과 표지’를 부착해야 하나 주행형 카메라(차량탑재형), 무인단속 카메라(고정형)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 ‘과태료 부과 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무인카메라(CCTV)의 설치·운영

제9조(설치)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불법 주정차가 잦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사전 의견수렴(행정예고 등)을 거친 후 설치한다.

제10조(무인카메라 단속 방법) ①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차 검지하여, 20분 이상의 유예 시간을 제공한 후 자동 시스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②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20분 이상의 유예 시간을 제공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③ 남원시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스템 촬영시간은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⑤ 비상 깜박이가 켜진 차량이나 위반차량 운전자가 차량 내나 인근에 있어도 확정하여 단속한다.

⑥ 버스나 택시가 해당 승강장 외에 주차할 때는 확정하여 단속한다.

⑦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우천 시에도 시행할 수 있으며,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의 기술적인 요인 등으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확정하여 단속하지 않는다

제11조(무인카메라 센터 운영실) 무인카메라(CCTV)의 센터 운영실은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상황실(이하 “교통상황실”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12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화상정보(증거사진)의 보관 장소 및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교통상황실로 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그 밖에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CCTV 설치목적 외의 활용은 불가능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열람 및 제공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접근권한)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제한한다.

제14조(운영인력 및 임무) ① 총괄책임자는 교통과장이 되며, 시스템 전반에 대해 총괄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교통지도 담당이 되며, 시스템 운영을 관리한다.

③ 실무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업무담당자로 하고, 총괄 및 운영책임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실무자는 시스템의 작동요령을 숙지하여 원활한 단속을 위해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력의 임무는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15조(화상정보 처리의 제한 등) ① 시스템 운영인력은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부당하게 수정·삭제해서는 안 된다.

② 시스템 운영인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상황을 제외하고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위반사항이 명확하도록 증거 사진 촬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모드 설정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16조(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밖에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7조(과태료 제외대상범위 등)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대상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과태료 감경)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과태료를 경감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진술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19조(의견진술, 이의신청) ①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의견

진술은 사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 운전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남원시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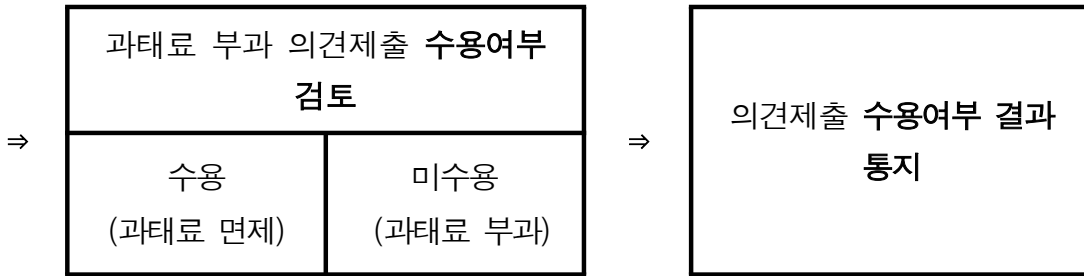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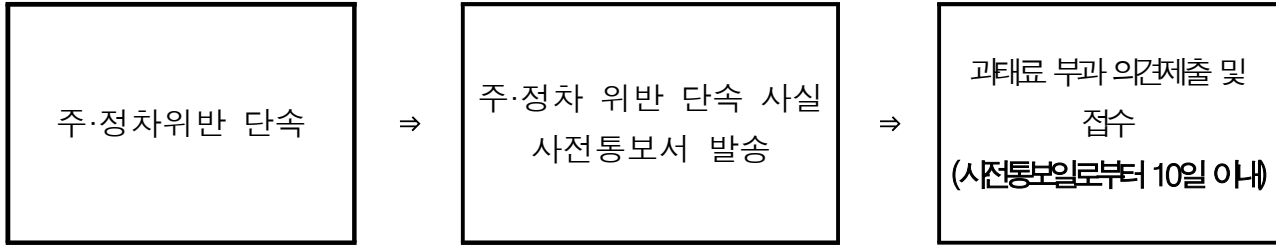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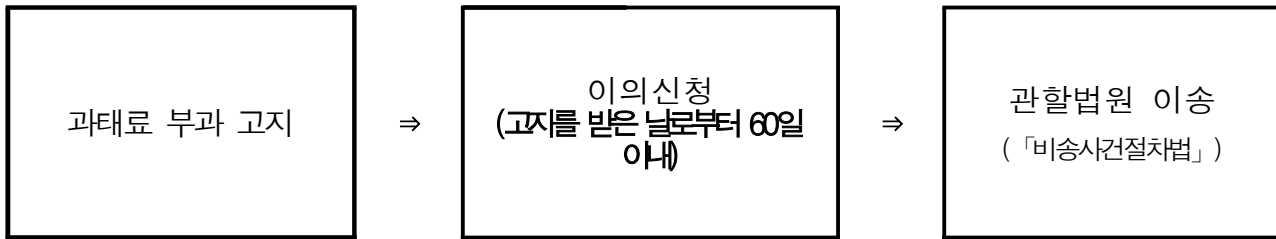
[별표 1]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 (제19조제1항 관련)

1. 의견진술



2. 이의신청



○ 의견진술은 방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서 (제19조제1항 관련)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차량번호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
	단속장소	주변			
의견진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와 관계		
의견진술	○ 의견진술 사유(주정차위반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증명자료					
접수번호		결 재	과장		년 월 일 진술인 (인/서명)
접수일시			담당		
처리과			담당자		